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 회 의 명 : 제52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 회의일시 : 2018. 9. 18.(화) 15:30

-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 참석위원 : 이효성 위 원 장
허 욱 부위원장
표철수 상임위원
고삼석 상임위원 (4인)

- 불참위원 : 김석진 상임위원 (1인)

제52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15시 30분 개회 】

1. 성원보고

- 이효성 위원장
 - 차중호 의안·정책관리팀장 성원 보고해 주십시오.
- 차중호 의안·정책관리팀장
 - 재적위원 다섯 분 중 네 분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 국기에 대한 경례

- 차중호 의안·정책관리팀장
 -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3. 개회선언

- 이효성 위원장
 - 2018년 제52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지난 회의록 확인

- 이효성 위원장
 - 제47차, 제48차 및 제50차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을 확인하고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회의록과 속기록에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의하신 대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4-1. 서면회의 결과 확인

○ 이효성 위원장

- 그리고 제49차 서면회의 결과, 제의된 <의결안건> 1건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회의록에 이의가 없으시면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이효성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1건, <보고안건> 4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안건을 공개로 심의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회의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안건 심의의 효율성을 위해 이용자정책국, 기획조정관 소관 안건 순으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 의결사항

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2018-52-460)

○ 이효성 위원장

- 먼저 <의결안건 가>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에 대하여 최선경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최선경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결 주문입니다.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의결한다. 의결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의 과정에서 자구, 체계, 문구수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한다’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사물위치정보사업 신고제 도입, 소상공인 등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에 대한 신고 간소화 등을 규정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경과입니다. 지난 7월 11일 위치정보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위원회에 보고한 이후에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를 실시했고 의견 없었습니다. 이에 9월 14일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결과, 비중요 규제로 원안 통과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첫째, 사물위치정보사업 신고 관련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법률이 시행령에 위임한 사물위치정보사업의 신고 등 세부적인 사항을 기존 신고대상인 위치기반서비스사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소규모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관련입니다. 법률이 시행령에 위임한 소상공인 등의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신고 등 각종 신고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되 법인 합병 등 신고서류는 기존 위치기반서비스와 동일하게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셋째, 위치정보 관련 사업자의 이용약관 공개 관련입니다. 위치정보사업자 등의 이용약관 신고 의무가 이용약관 공개 의무로 변경됨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통신단말장치의 첫 화면’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글자 크기, 색상 등을 활용하여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넷째, 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관련 고시 제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섯째, 개인위치정보사업자의 경보발송 및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에 관한 통계자료 제출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매 반기가 종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련 통계자료를 방통위와 국회 과방위에 제출하되, 경고를 발송한 매월별 건수,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에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한 매월별 건수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과태료 기준 등을 기존 신고사업자인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재처분 기준에 사물위치정보사업자 유형을 추가하되 처분 수위는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와 동일하게 규정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에 사물위치정보사업자와 소상공인 등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의 변경신고·양수·합병 신고 등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기준을 추가하였습니다. 위원회 보고 후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향후 일정입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의결해 주시면 9월 말까지 법제처 심사를 완료하고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법 시행일인 10월 18일에 맞추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효성 위원장

- 개인의 위치정보는 중요한 보호 대상이면서도 잘 처리가 되면 중요한 산업데이터로서 활용될 가치가 크기 때문에 이 양자를 잘 조화시키기 위한 법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님들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허 욱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허 욱 부위원장

- 이 안건은 사물위치정보사업에 신고제를 도입하고 또 소상공인 등의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에 대한 신고 간소화 등 규제 완화에 관련된 건이고, 입법예고기간에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 이견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원안에 동의합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다른 의견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7. 보고사항

라. 「온라인 개인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 이효성 위원장

- 이어서 <보고안건 라> “ 「온라인 개인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최선경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최선경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 및 경과입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상 규정되어 있는 ‘개인정보 열람권’ 등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주요 내용을 구체화함으로써 보다 실질적인 권리 보장이 가능하도록 가이드라인 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작년 10월부터 시민사회·산업계·법제도 분야의 전문가로 연구반을 구성·운영하였고, 사업자 등 이해관계자로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개정 필요성입니다. 그간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상 주요내용을 반영하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결정권과 통제권을 보장함으로써 정보주체의 권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3페이지입니다. 시민단체가 ‘17년 상반기에 주요 온라인 업체를 대상으로 ‘열람 고지 및 실태조사’ 후 방통위에 개인정보 열람청구권과 관련하여 개선사항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였습니다. 기본 방향입니다. 법 개정 사항 관련입니다. 개정법에 맞추어서 용어를 조정함에 따라 표제를 「온라인 개인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으로 변경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 처리를 재위탁할 경우에 위탁자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가 해외로 이전된 후 제3국으로 다시 재이전되는 경우, 국외이전과 동일하게 이용자에게 명시적으로 알리고 또 동의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시행령 개정 사항 관련입니다. 이용자로부터 동의 획득 시 기존 우편·팩스·이메일 등을 통한 것에서 문자메시지, SNS 등으로 확대함으로써 사업자의 비용·시간 부담을 완화 하였습니다. 이용자 권리보장 실질화 관련입니다. 개인정보 열람·제공 요구할 경우에 대상 기준을 설정했고, 또 개인정보보호 업무 담당 부서의 명칭과 연락처를 기재함으로써 이용자의 권리가 보다 구체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첫 번째,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 기준과 관련하여 본인확인을 서비스 제공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고 ‘만14세 미만 아동 여부 확인’ 시 만14세 이상임을 직접 체크할 수 있는 항목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단계별 개인정보 파기 기준과 관련해서는 위탁자가 영세 사업자이고 수탁자가 사업자인 경우에 위탁자의 능력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또한 개인정보 파기에 준해서 별도 분리 저장·보관 하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이해하기 쉬운 동의서 작성 기준과 관련하여 동의획득 방법의 확대, 국외재이전 시 이용자 동의 의무와 더불어, 마케팅 활용 동의와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의 수신동의를 별도로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제 3자 제공을 받는 자가 서비스 단계에서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구매·결재 시점에 이용자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획득하도록 하였습니다. 네 번째, 개인정보 열람·제공과 관련된 운영 기준입니다. 개인정보 열람·제공 등의 대상 항목을 회원 가입 정보, 제3자 제공 현황 그리고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이용자의 동의 현황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또한 처리 부서 명칭과 연락처 등은 홈페이지에 직접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열람·제공 등 요구할 경우에 사업자는 별도 메뉴나 또는 시스템을 운영 가능하도록 하고 또 사업자가 자료를 제공할 경우 실비의 범위에서 수수료와 우송료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이용자의 요구 목적이 불법적이거나 아니면 열람의 요구 범위가 과도한 경우 등에는 열람 제공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도록 하되, 이유를 명시해서 이용자에게 이를 통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는 개인정보처리 방침 공개 운영기준입니다. 개인정보보호 업무 처리의 부서, 연락처 등 이용자 권리 행사에 필요한 항목을 상단에 명시하는 등 처리방침의 공개 순서를

변경하도록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는 이용내역 통지 운영 기준입니다. 사업자는 현재 연1회 이상 개인정보 이용내역을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를 이용자별로 개별적·구체적으로 통지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위원회 보고 이후 이용자와 사업자 대상으로 홍보안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효성 위원장

- 온라인 개인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이 '14년에 제정되었는데 그 이후 이번에 법령 개정이 있었고 또 이 내용을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권리보장이 될 수 있게 개정안을 제출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시고 의견 있으면 주시지요. 허 옥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허 옥 부위원장

- 비록 국회에 통과되지 않았지만 대통령님이 제안했던 헌법 개정안에 의하면 모든 사람은 자신에 관한 정보를 보호받고 그 처리에 관하여 통지할 권리를 가진다고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명문화한 바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은 헌법적인 가치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온라인 개인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결정권 그리고 통제권을 강화하는 것에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고자료를 보면 시민단체가 건의한 내용도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 최선경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작년 11월경에 시민단체가 개인정보 열람청구와 관련해서 저희 쪽에 실태조사를 한 이후에 개선사항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열람 시 사업자가 실제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받을 경우에 고지를 잘하고 있는지 그리고 신청하는 절차가 간소한지 그리고 열람을 실제 했을 때 이용자가 알기 쉽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 실태조사를 했고 그 결과를 반영해서 저희에게 그 내용으로 해서 개선사항을 건의했습니다.

○ 허 옥 부위원장

- 관련된 내용들은 충분히 반영된 것입니까?

○ 최선경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예. 저희가 연구반 회의를 작년부터 계속 진행했었고 시민단체도 참여하고 사업자도 참여한 연구반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연구반에서 논의한 내용이 대부분 가이드라인에 담겨져 있습니다.

○ 허 옥 부위원장

- EU GDPR 적정성 평가를 위한 사전 법제 정비의 하나가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에 관련된 규제 조항 신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 국회 때 법안이 통과되었는데 이것도 가이드라인에 반영되었지요?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예.

○ **최선경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저희가 법정 고지사항을 가이드라인 21페이지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뿐만 아니라 재이전 부분도 반드시 이용자에게 고지하도록 규정했습니다.

○ **허 욱 부위원장**

- 잘 알겠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이용권이 강화되고 사업자의 무분별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관리 행태가 개선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정책과 관련해서 한 말씀드렸으면 합니다. 4기 위원회 첫 번째 회의 때 제가 관련 안건을 의결하였습니다. 그때 방통위는 이용자 정책 관련 규제당국으로서 개인정보의 보호 가치를 최우선에 두면서도 동시에 안정성을 강화한 개인정보 활용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법과 제도적인 기반 조성에 나설 시기가 되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개인정보보호와 활용의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최근 흐름을 보면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에 조화로운 정책추진보다 일부 시민단체의 보호 일변도의 목소리가 더욱 수용되는 분위기여서 무척 안타깝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개인정보 관련된 법제 도입 때 미국식 실용주의 모델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공공분야와 민간분야를 구분해서 규제하고 민간분야는 전문분야별로, 즉 정보통신이나 금융, 의료 등 개별법을 통해 규제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2011년에 기존 법체계와 올바른 개인정보감독기구 구성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가 부족한 상태에서 유럽식 단일 법체계인 일반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개인정보 관련된 법체계의 정합성과 일관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발생되었습니다. 최근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상을 강화하는 논의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와 더불어서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데이터의 원활한 활용을 가능케 하는 거버넌스 체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사무처에서도 향후 입법 과정에 더욱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가이드라인 개정안 첫 번째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 기준은 가이드라인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일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정책 중 하나입니다. 국장님, 그렇지요?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초기에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포괄적인 개인정보 수집 동의도 많이 받았습시다만 방통위가 계도하고 사업자들도 자율적으로 해서 최소 수집 원칙을 많이 강조하고 또 준수하기 위해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정기적으로 점검해 보면 글로벌 인터넷 SNS 사업자들도 여전히 이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받아

놓고 마케팅에 활용한다거나 여전히 그런 것들이 완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페이스북도 마찬가지이고 여러 SNS를 보면 그러한 행태가 있는데 기존의 법에도 나와 있고 온라인 개인정보 처리 가이드라인도 개정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용자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잘 준수가 되고 있는지 꼼꼼하게 점검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연말까지 이런 계획들이 있습니까? 국장님!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저희가 지난번에 조사해서 발표했던 것처럼 소셜 로그인을 활용한 개인정보 이용실태 그리고 지금 O2O 사업자 등에 대한 기획점검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글로벌사업자 또는 국내사업자들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최소 수집하고 보호 관점에서 제대로 정보통신방법을 준수하고 있는지 실태점검도 하고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리고 아까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개인정보를 잘 보호하는 것과 또 그것을 안전하게 활용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서로 배치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용자들이 자기가 제공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장된다는 그런 확신이 있을 때, 믿음이 있을 때 개인정보를 산업에 활용하는 부분들에 대해 동의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정보가 함부로 사용되고 또 그것이 범죄에 악용되고 과도한 상업화에 활용된다면 어느 이용자가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개인정보 최소한의 수집 원칙을 넘어서서 과도하게 마케팅에 활용한다면 이용자들께서 내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다는 확신을 못하게 됩니다. 실제로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도 광고 관련된 메일이나 문자를 받고 '내가 개인정보 마케팅 활용에 동의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온라인상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규제기관입니다만 일단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다 이러한 믿음을 이용자들, 국민들에게 주어야 '저희가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개인의 정보를 유용하게 활용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동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양자 간 균형 잡힌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 표철수 상임위원

- 없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나.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 이효성 위원장

- 다음은 <보고안건 나> “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객진희 이용자정책총괄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객진희 이용자정책총괄과장

- 금지행위 등에 대한 조사·제재 및 심의·의결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방송통신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추진경과입니다. 지난 4월부터 조사 및 심결업무 개선(안)을 토대로 업무처리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관련 부서 협의, 또 법률자문을 거쳐 오늘 일부개정안을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조사 실시 관련 규정입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방송법, IPTV법, 단말기유통법 금지행위에 대해서는 업무처리규정에 따라 조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는 세부적인 업무처리 관련 규정이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망법의 규정을 위반한 개인정보 침해 행위를 업무처리규정상 금지 행위로 규정하고 업무처리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존 조사 보고·절차에 관한 개인정보 침해 사건 추가 관련 규정입니다. 업무처리규정에는 개인정보 침해 관련된 규정은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개인정보 침해 사건도 사건 관리나 자료제출 명령이나 출석 요구 및 현장조사 등의 조사 절차를 업무처리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사실조사는 사전보고 후 착수하여야 하지만,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등 긴급을 요구할 요하는 경우에는 조사착수 후 7일 이내에 사후보고도 가능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확인서 작성 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관련 규정입니다. 현재는 조사관이 조사 당사자 등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에는 확인서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생명이나 재산의 이익 등을 위해 명백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확인서 작성 시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 대신에 생년월일과 성별을 기재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완조사 명령 권한 상향 관련 규정입니다. 현재는 해당 국장이 사실판단을 오인하였거나 새로운 증거 발견 시 보완조사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사결과보고서 최종 보고대상이 사무처장이기 때문에 이 보완조사 명령도 최종 주체를 사무처장으로 변경하여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고’ 명령 주체 일원화 규정입니다. 현재는 해당 국장이 법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하는 등 시정조치의 실익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경고’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고’ 명령은 위법행위 정도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위원회에서 ‘경고’ 명령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해당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종결 권한 등 상향 규정입니다. 사망이나 해산, 폐업 등 시정조치 이행이 불가능할 시에는 해당 국장이 사건을 종결 처리하고 또 실제 부도가 났거나 사업자가 도피한다든지 조사가 곤란할 시에 조사를 중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사 착수나 결과보고도 사무처장으로 상향하였기 때문에 이 조사 종결·중지 권한 조항도 사무처장으로 상향하고 일원화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 종결·중지 시 결과통지 관련 규정입니다. 현재는 위원회가 최종 의결할 시에 그 결과를 피심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처장이 조사절차를 종결하거나 사건종결 또 조사 중지를 결정할 시에는 조사대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조사절차 종료 시, 사건종결, 또 조사중지 시에도 조사대상자에게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명령 이행여부 확인 규정입니다. 현재는 시정조치명령은 이행 여부에 상관없이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만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업무처리규정의 세부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30조에 각종 지침이나 서식 등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오늘 보고한 안건을 접수해 주시면 행정예고 20일 그리고 관계부처 협의, 규제위 심사를 거쳐 올 12월에 위원회에 의결해서 공표·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저희가 행정조사를 보다 엄격히 절차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의견 있으면 주시지요. 허 욱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허 욱 부위원장

- 이번 안건과 다음 안건인 조사절차 세부 업무처리 지침은 사무처의 금지행위에 대한 업무처리 방식에 있어서 일대 혁신을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행위를 업무처리규정상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또 그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도록 한 것은 최근의 개인정보 침해 관련 조사가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합니다. 특히 보완조사 명령권자와 조사종결권자를 기존 국장에서 사무처장으로 상향한 것은 조사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지만 사무처장께서도 금지행위 업무처리 과정에서 투명성 제고와 더불어 전문성과 신뢰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써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 조경식 사무처장

- 알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또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다. 「방송통신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세부 업무처리 지침」 제정안에 관한 사항

○ 이효성 위원장

- 다음은 <보고안건 다> “ 「방송통신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세부 업무처리 지침」 제정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광진희 이용자정책총괄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광진희 이용자정책총괄과장

- 좀 전에 보고드린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처리 규정」 제30조에 따라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추진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사절차의 개시 관련 조항입니다. 조사관은 사건번호와 사건명칭 등이 기재된 조사착수보고서를 전산망을 통해 등록하고 사무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사건번호는 사업자별 또 조사사건별로 1개를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조사대상기간이 동일한 여러 조사사건인 경우에는 1개의 사건번호만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불가피하게 사전통지를

못하고 현장조사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조사착수보고서에 명기해서 법률에서 정한 조사 절차를 최대한 준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과정에서의 자료작성 관련 규정입니다. 조사관이 출석요구나 현장조사를 통해 사실을 확인 시에는 별도 서식에 따른 확인서 및 현장 조사서를 작성하여 사건 담당 부서장에게 반드시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디지털증거 수집 관련된 규정입니다. 디지털 기록 삭제 등 증거인멸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를 두고 디지털포렌식을 전담하게 하는 등 조사역량을 강화토록 하였습니다. 디지털자료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수집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확인서 또는 현장조사서에는 수령일시와 장소 그리고 사용자 정보 등을 적시하고 피조사자가 수립된 디지털자료에 대하여 복사본을 요청할 시에는 이를 교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피조사자에게 디지털자료에 포함된 개인 정보나 영업비밀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보호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그 권한도 새롭게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피조사자의 변호인 참여 관련 규정입니다. 피조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피조사자가 선임한 변호인을 조사 과정에 참여할 수 하도록 하되, 증거인멸이나 기타 등의 사유로 조사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조사관이 조사 실시 후 작성하는 결과보고서는 반드시 전산망을 통해 등록하고 사무처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관리 규정입니다. 조사관이 작성, 수집, 접수한 자료는 별도 서식에 따라 목록을 기록하고 편철하도록 하였으며, 디지털자료에 대해서는 클라우드에 반드시 보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사건담당 부서는 편철한 사건기록을 보존기간의 기간일로부터 2년간 보존하도록 하고, 정보통신망법 제64조에 따라 수집·제출된 자료는 자료제출 요구의 목적이 달성될 시에는 즉시 폐기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또 업무인계·인수와 관련해서도 원인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전산망을 통해 업무를 인계·인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향후 일정은 오늘 보고한 내용을 접수해 주시면 행정예고 20일, 그리고 절차와 관련된 법제처 심사를 거쳐 12월에 최종 위원장님 결재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앞에 행정행위 등과 관련되어서 특히 조사업무와 관련되어서 저희 기존 조사업무의 세부사항들을 정해서 저희 조사업무가 임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일관성이 있도록 하기 위한 것들입니다. 의견 있으면 주시지요. 표철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표철수 상임위원

- 우리 위원회 업무를 하면서 과거에 조사절차를 완벽하게 지키지 않아서 문제를 야기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사절차도 명확히 하고 그다음에 정보수집 역량도 강화하고 보고서 관리 강화, 또 업무 인계 규정을 명확히 한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 중요한 사안으로 저는 원안에 동의합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또 다른 분 말씀해 주십시오. 허 욱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허 욱 부위원장

- 이번에 조사절차를 명확하고 또 구체화시킨 이런 지침을 마련한 것에 관해 매우 뜻이 깊은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안건은 특정 감사 결과에서 지적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개선사항이 반영된 것입니까?

○ **곽진희 이용자정책총괄과장**

- 주로 조사관리시스템을 보다 강화하도록 지적을 받았는데 우선 기존에는 서류로 보고하던 부분을 조사착수 보고와 결과보고서를 반드시 전산망을 통해 보관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그리고 업무인수·인계도 보다 철저히 해서 책임을 명확히 하고, 또 자료관리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모든 자료를 디지털로 또 클라우드에 보관한다든지 서류는 편철해서 보관한다든지 자료관리도 철저하게 하도록 새롭게 규정을 마련한 부분은 그대로 감사 지적사항을 반영한 부분입니다.

○ **허 옥 부위원장**

- 절차를 명확하게 마련한 것과 또 관련된 조사내용들을 디지털자료로 남겨서 차후에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인 것이지요?

○ **곽진희 이용자정책총괄과장**

- 예.

○ **허 옥 부위원장**

- 이번 지침 제정은 내부감사를 통해 지적된 제도개선안을 충분히 반영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규제 당국으로서 조사업무 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한 조치들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사무처의 노력을 높이 평가합니다. 다만, 내부감사 때 명확하게 밝히지 못했던 일정 부분에 대해 사법기관에 의뢰했던 수사가 장기간 지체되고 있는 부분들은 매우 아쉬움이 큼니다. 조사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고와 조사착수, 조사과정과 결과처리를 전산망을 통해 등록하도록 했고, 또한 내년 예산에 조사심결 지원시스템 구축 예산까지 확보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시스템이 조속히 가동될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조사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조사 담당자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디지털포렌식 장비 도입을 하기로 했는데 전문인력 확보 역시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사무처장님께서 관련 업무를 우선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회 조사 역량 강화를 위해 조사업무와 심결 지원 및 소송업무의 분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舊 방통위에서는 심결지원팀이 따로 있어서 심결서 작성과 소송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그런데 2013년 조직 개편 과정에서 관련 직제가 사라졌습니다. 이 부분이 매우 필요한 것이고, 특히 조사 담당자들은 이로 인한 업무 부담이 상당히 크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무처에서 심결 지원 조직 신설에 관련된 방안들을 검토해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조경식 사무처장**

- 알겠습니다. 포렌식에 관련된 것은 이번에 노력해서 예산은 확보가 됐고 심결지원팀의 인력 보강 문제는 행안부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허 옥 부위원장**

- 예.

○ 이효성 위원장

-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가. 「방송통신위원회 지역사무 업무처리 내부위임에 관한 규정」 제정(안)에 관한 사항

○ 이효성 위원장

- 마지막으로 <보고안건 가> “ 「방송통신위원회 지역사무 업무처리 내부위임에 관한 규정」 제정(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 헌 혁신기획담당관님 보고해 주십시오.

○ 이 헌 혁신기획담당관

- 「방송통신위원회 지역사무 업무처리 내부위임에 관한 규정」 제정(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유입니다. 중앙전파관리소장에 대한 업무위탁이 해지됐고 방송통신사무소 신설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방송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전파법」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 지역사무를 방송통신사무소장에게 내부위임하기 위함입니다. 참고로 직전에 오늘 국무회의에 의결되었고 관보가 게재될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내부위임의 범위입니다.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서 회수한 위탁사무를 신설하는 방송통신사무소장에게 내부위임합니다. 내부위임하는 업무의 범위는 <표>에 있는 총 10가지 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나> 보고 및 조정입니다. 방송통신사무소장이 내부위임 업무를 수행하면서 주기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중요사안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직접 조정 또는 업무처리 지시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 존속기한입니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존속기한을 3년으로 합니다. 그리고 향후 방송법, 정보통신망법, 전파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위임근거가 마련될 경우에는 현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을 부칙에 담았습니다. 향후계획은 10월 초 위원회 의결 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허 욱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허 욱 부위원장

- 지역사무소 신설을 위해 노력해 주신 모든 분들, 고삼석 위원님을 포함해서 다른 처장님, 국장님, 과장님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과기정통부에서 회수하는 위탁사무를 방송통신사무소장에게 위임하기 위해서는 법과 시행령에 방통위 소속기관에 위임조항이 신설되어야 합니다. 단, 법 개정 전까지 사무소장이 방통위 이름으로 행정행위를 할 수 있도록 방통위 내부위임 훈령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 입법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임되는 업무가 침익적 행정행위가 대다수입니다. 따라서 업무를 이관받는 과정에서 혼란과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영관 기획조정관

-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과거 방송통신위원회가 미래창조과학부로 분리되면서 위원회가 가지고 있던 업무를 일부 미래부 소속 중앙전파관리소에 위임했습니다. 그동안은 특히 지역에 관련된 업무를 함에 있어서는 상당히 제한적으로밖에 할 수 없었는데 이번에 지역사무를 관장할 수 있는 사무소가 신설됨으로써 앞으로는 상당히 효율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현장에서 업무를 보는, 특히 지역에서 방송과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소통하기 위해서는 과천까지 와야 하는 불편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들이 제한적이지만 권역별로 사무소와 분소가 설치됨으로써 해소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무소 설치의 궁극적인 효과는 방송통신 행정의 효율성 제고 그리고 이용자에게 대한 방송통신서비스 제고입니다. 이 부분들을 특히 유념해서 향후 지역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께서도 각별히 유념해서 대국민서비스 정신에 대해서는 각별히 생각하시면서 일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또 신경 많이 쓰셨고 특히 국장님, 과장님께서 이 일을 챙기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잘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표철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표철수 상임위원

- 일단 이렇게 된 것은 존경하는 부위원장님, 또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셔서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것 자체가 만사지탄의 감이 있습니다. 진즉부터 됐어야 할 일이 늦게 된 것이고, 그러나 지금이라도 되어서 다행인데 아쉬운 것은 부산, 광주, 대전 쪽에는 일종의 분소 형태인데 이것은 정상적인 지역사무소로 되어야 맞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먼저 출범시키고 추가적으로 본격적인 지역사무소 이름 그대로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8. 기 타

○ 이효성 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마쳤습니다. 다른 논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차기 회의는 추석 연휴를 보내고 10월 2일 오후 2시 30분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뒤에 기자님들도 수고하셨습니다. 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9. 폐 회

○ 이효성 위원장

- 이상으로 2018년 제52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6시 11분 폐회 】